

1976년 제4차 통관물품운송에 관한 법

제1절 통관물품

제1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통관물품은 국내에 유통시키지 아니하고 국외로 통관시킬 목적으로 국외에서 생산 또는 수출하여 이 법의 제16조에 명시한 세관에 반입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제2조 관세규칙에 따라 국내 통관을 허가 받은 가축, 동물, 차량의 통과는 통관운송으로 본다.

제3조 통관물품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가) 직접통관물품

세관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항구에 도착한 그 상태로 동일한 항구에서 다른 선박으로 재 선적할 목적으로 이 법의 제16조(가)항에 명시한 항구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선박에 적재한 물품.

(나) 간접통관물품

상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육상, 항공상, 해상세관을 통하여 재 수출할

목적으로 이 법의 제16조에 명시한 세관으로 반입하는 물품. 보관, 재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하여 허가된 자유구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간접적 통관물품으로 보며, 이 물품은 통관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출하여야 한다.

제2절 절차

제4조 직접통관물품과 간접통관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관계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출한 운송, 하역 또는 보관허가신청서에 따라 진행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문서를 첨부한다.

- (1) 관계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된 세관증명서
- (2) 선하증권과 물품적하목록 사본
- (3) 물품전체의 국외반출을 약정하는 관계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된 약정서
- (4) 세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

제5조 전 조의(1)에 명시한 세관증명서에는 다음의 정보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증명서제출자의 성명, 직책, 직업, 국적과 주소

- (2) 물품을 선적할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국적과 (존재 시)명칭과 차량소유자의 서명과 주소
- (3) 물품의 종류, 원산지, 특성, 포장박스의 수, 표식, 번호와 중량
- (4) 목적지국가의 명칭

제6조 세관은 전 두 조에 명시한 세관증명서를 요구한 후 세관명세서의 기재한 내용에 따라 상인 또는 발송인의 책임 하에 수출증명서를 작성하고, 수출증명서의 항목에 적용되는 적하목록을 발행하고 직인을 찍는다. 의심이 되는 경우 세관은 물품을 검사한다.

제7조 세관은 이 법을 시행하여 재정석유부장관이 공포한 결정에 따라 통관물품과 운송수단에 대하여 확인도장을 찍는다.

제8조 확인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시 국내에 물품전체 또는 일부를 하역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한 검사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9조 물품에 대한 확인도장을 남용하는 행위는 밀수시도행위로 본다.

제10조 물품의 수입업자 또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발송인은 수입증명서 또는 카드제출에 관한 통관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절 운송수단

제11조 등록하고 확인된 운송수단을 통하여서만 통관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은 카타르와 인접국가 간 등록된 운송수단을 통하여 운송한다.

제13조 통관을 위한 운송로가 있는 경우 운송수단은 목적지국가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국가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국가에 등록한 운송수단은 통관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

제14조 통관을 위하여 입국하는 모든 차량, 화물차량 또는 운송수단은 종류에 관계 없이 국내운송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제4절 세관

제15조 다음의 조항에 명시한 세관은 통관운송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세관에 반입하지 아니한 물품은 밀수품으로 본다.

제16조 세관을 통한 통관운송은 다음의 장소에서 이행한다.

(가) 항구

(1) 도하항구

(2) Al Ruwais항구

(3) Umm Said항구(세관의 별도 허가가 있는 경우)

(나) 육지의 세관본부

(1) Abou Samra

(2) Sundanesisch

(다) 항공세관본부

도하공항

(라) 재정석유부장관이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그 밖의 장소

제5절 통관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품

제17조 다음의 물품은 통관을 금지한다.

(가) 하쉬쉬, 코카인, 헤로인, 아편, 해독제를 포함한 모든 종류와 마약류와 자연상태 또는 실험용인 마약류의 모든 파생물품

(나) 생물학적, 화학적, 전염성 있는 무기

(다) 국왕 또는 국왕을 대행하는 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화력무기와 모든 종류의 폭발물

제18조 전 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세관은 재정석유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통관이 금지된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공포한다. 이 금지물품은 재정석유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취득한 후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하다. 재정석유부장관이 수입업자의 비용 및 책임 하에 재 수출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사전허가 없이 통관금지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물품을 몰수한다.

제6절 조속한 부패의 위험이 있는 물품

제19조 세관은 세관지역에 통관하는, 조속한 부패의 위험이 있는 물품의 체류기간의 지정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세관은

해당물품을 경매로 처분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파손할 수 있다.

제7절 세금

제20조 관세를 지급하거나 관세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서를 제시하거나
세관에서 승인한 약정서에 서명한 후에 한하여 통관물품을 운송할 수 있다.
관세, 보증서 또는 약정서는 물품전부의 반출을 증명하는, 이 법의 제16조에
명시한 세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한 후 반환한다. 세관장이 지정한
경우 도착지국가로의 물품도착증명서신청을 통하여 물품반출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 직접통관물품에 대하여는 선적화물 1톤당 20리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1톤당 1리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는 최대 2,000리얄이다.
하역, 운송, 보관, 재 운송, 적재는 관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 운송물품은 직접통관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지정관세는
면제한다. 또한 도착일자부터 첫 7일 간은 보관세를 면제하고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이 보관세를 부과한다.

물품	1일당 부과하는 보관료
1kg-50kg	1톤 당 1리알
51kg-100kg	1톤 당 2리알
101kg-500kg	1톤 당 4리알
501kg이상	100kg당 2리알

제23조 육상운송차량과 모든 종류의 화물차에 대하여는 통관 시 적하목록에
 검인을 찍는 대가로 1대의 차량에 대하여 15리알을 부과한다.

제24조 운송수단이 변경된 경우 간접통관에 대하여는 20리알의 비용을
 부과하며, 적하목록발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적하목록발급 또는 도착증명서교부 시 5리알의 비용을 부과한다.

제26조 소유자가 다른 국가로 재수출 할 목적으로 수입물품에서
 통관물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물품은 통관물품으로 본다.

제27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세를 면제한다.

(가) 국제적인 선물과 지원물품. 이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나) 전염병척결과 살충과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공인된 국제단체에서 발송한 의료원조물품과 살충제. 이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 정치기관과 영사관에 반입하는 귀중품 외 물품. 이 경우 해당국가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라) 살아있는 동물과 가금류

(마) 종교, 문화, 언론 출판물

(바) 모든 종류의 싱싱한 채소와 과일과 대추야자

(사) 동물사료와 냉동생선

제28조 전 조에 명시한 모든 경우 하역 및 적재료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8절 처벌

제29조 세관은 사전동의 없이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통관물품을 몰수한다. 세관은 상기 명시한 물품을 몰수하는 대신 물품에 대하여 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결정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명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명한다.

제9절 총칙

제31조 이 법의 시행 시 통관에 관련하여 카타르와 다른 국가 간 체결한 협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재정석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결정과 규칙을 공포한다.

제33조 모든 관할부처는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일자부터 60일 후 시행한다.